

2025년 1분기 희망퇴직 시행 계획

- 시행근거 : 2018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 이행(2018.05.25)
- 신청대상 : 6개월 이상 정년 잔여 직원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
- '25년 2분기 임금피크제 도래예정자 ※ '24년 단체교섭(임금피크개선)에 따른 대상자 확대
 - 만 57세 : '68. 3월생 ~ '68. 5월생, (2025년 限 만57세 도래자 포함)
 - 만 58세 : '67. 3월생 ~ '67. 5월생
 - 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
 - 산재승인 이력이 있거나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
 -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어 병원급 진단서 제출자
- ※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가능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
□ 주요 일정(안)

구분	일정	내용
공고 신청접수	3.5(수) ~ 3.11(화)	• 시행문서 발송 및 전사 공지(3.5) • 접수방법: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- 단, 공상/장애는 증명서류* 및 신청사유 제출必 * 증명서류: 요양·보험급여 결정통지서 or 장애인등록증 or 병원급 진단서
인사위원회 심의/확정	3.12(수) ~ 3.19(수)	• 부서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선발자 확정 (단, 공상/장애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 시행) - 윤리성 검토 등 결격사유 확인(3.12~) - 공상/장애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심의
업무 인수인계	3.20(목) ~ 3.27(목)	• 선발자 업무 인수인계 시행 • 퇴직서류 징구
퇴직발령	2025. 4. 1자	• 퇴직발령 처리

※ 전직지원 교육은 정년퇴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퇴직 후 시행(희망자 限)

[참조 #1] 희망퇴직자 처우

구분	내용
희망 퇴직금	• 보상기준 : <u>월기본급*</u> × 산정 월 수 × 지급률 • * 보수규정 제42조의 피크임금 기준의 월 기본급 적용 - 산정 월 수 (최대 45개월) · 정년퇴직일 5년 이내는 잔여 월 수 매 2월당 1개월 · 5년 초과 10년까지는 잔여 월 수 매 4월당 1개월 - 지급률(%): $100 + [55 - \{(20 / 45) \times \text{산정 월 수}\}]$
금전적 보상	• 특별기여금*: 여행상품권(150만원)상당의 기여금 지급(총액 동일)
비금전적 보상	• 감사선물 : 공로패, 명예사원증 • 복지지원 : 유무선통신비 보조(1년간 최대 월 3만원), 동우회비 지원(22만원)

* '24년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른 특별기여금 항목 신설